

후원회 (변경등록신청)·(변경신고)서					
문서번호					
구 분		변 경 내 용		변경일자	변경사유
명 칭 (약 칭)					
사무소의 소재지				전 화 번 호	
대 표 자	성 명	(한자 :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전 화 번 호	
정 관 또 는 규 약					
회 인 및 대 표 자 직 인 의 인 영					
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(변경등록신청을)·(변경신고를) 합니다. 년 월 일 ○○ 후원회 대표자 직인 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※ 구비서류 1. 정관 또는 규약 1부 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. 인영서 1부 4. 회의록 사본 1부 5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주 1. "변경내용"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,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. 2.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 3.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<별지>에 따라 작성합니다. 4. 회의록 사본은 「정치자금법」 또는 정관(규약)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 5. 회의록에는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					